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01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제220720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8조의11)	2

I.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제220720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 2.

다. 회 부 일 : 2025. 1.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3. 검토의견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8조의11)

현행	개정안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제38조의11(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u>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축사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시·도지사 외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은 국토교통부 본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각 권역의 국토분야 현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참고자료 참조), 이러한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¹⁾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 지역별로 신속하고 원활한 조사·대응을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1) 「건축사법」

제30조(보고·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²⁾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위반행위는 부실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 지역별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 역시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지역별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5

2) 「건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최근 5년간 건축사 징계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 위반사항별 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체	1,418	403	341	213	256	205
제2호(윤리선언 위반)	1	-	1	-	-	-
• 업무정지	1	-	1	-	-	-
제3호(업무범위 위반)	6	2	-	1	2	1
• 업무정지	4	2	-	1	-	1
• 견책	2	-	-	-	2	-
제5호(관계 법령 위반)	1,409	401	339	212	254	203
• 업무정지	671	191	135	111	137	97
• 견책	738	210	204	101	117	106
제7호(품위 손상)	2	-	1	-	-	1
• 업무정지	2	-	1	-	-	1

□ 처분 기관별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체	1,418	403	341	213	256	205
서울	160	66	35	24	17	18
부산	85	25	13	18	16	13
대구	111	16	19	14	42	20
인천	89	41	8	14	16	10
광주	56	10	22	9	7	8
대전	47	11	22	7	3	4
울산	14	-	5	3	5	1
세종	7	3	-	-	4	-
경기	359	94	93	48	53	71
강원	41	15	6	2	12	6
충북	61	9	25	9	9	9
충남	120	46	30	22	19	3
전북	26	11	6	3	2	4
전남	30	11	3	6	4	6
경북	71	14	13	10	18	16
경남	94	26	13	18	23	14
제주	47	5	28	6	6	2